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병도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권한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충분한 근로감독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